

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 양준욱 의원 (대표)발의

의안 번호	2387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18년 2월 14일

발 의 자 : 양준욱 의원(1명)

찬 성 자 : 조규영, 김진수, 이숙자,  
이혜경, 신건택, 김동율,  
김제리, 유찬중, 김경자(강서),  
박중화, 이병해, 장인홍,  
우창윤, 맹진영 의원(14명)

### 1. 제안이유

-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를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탄력적인 회기운영을 도모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가.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8조제1호 단서)

#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(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)
- 다.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##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호 중 “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”를 “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 「지방자치법 시행령」 제54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</p> <p>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지방의회의원 총선거(이하 "총선거"라 한다)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<u>9월이나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(생략)</p>	<p>제8조(정례회의 집회일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-- <u>따로 정할 수 있다.</u>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